

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19년 1월 14일 전수일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1월 21일 조례·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가.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시키고, 본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그 소요시간 측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,
- 나. 우리 군 규칙에서만 정하고 있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시·군 규칙의 형평성 제고를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충질문 시간 조정, 보충질문 관련 단서 신설(안 제79조제3항)
- “답변시간을 제외한 10분” → “답변시간을 포함한 20분”
 - 의장이 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분 추가할 수 있으며, 일괄질문·답변 방식에 따른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에 한함.
- 나. 질문요지서 제출기한 삭제(안 제79조제5항)
- “군정질문 5일 전까지” → “미리”
- 다. 용어 정비(안 제79조제6항)
- “질문” → “답변”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군정질문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분명한 질문과 답변 시간 측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, 우리 군에서만 정하고 있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시·군 규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, 제43조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